이 보도자료는 2023. 1. 9. 14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

전문공보관 형사1부장 손정숙

전화 031-523-4341

보 도 자 료

2023. 1. 9.(월)

제목	북한강 수상레저 인허가 비리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(제11조 제1항)

- 남양주지청 형사2부(부장 한문혁)는 2023. 1. 9.(월)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청평호에서 금품으로 공무원을 회유, 협박하여 불법공사·영업을 한 **가평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, 브로커, 지역 언론인 등 5명을 구속기소**하고, 불법 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  - 청정지역 내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으로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

- 검찰수사 결과,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서 **전직 군수비서실장 등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살포에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힌 사실**이 밝혀졌음

- 이 사건은 **막대한 금권, 지역언론, 지역유지의 외압과 회유에 맥없이 무너진 지방행정의 취약성을 드러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**으로, 개발업자·토착세력·지역언론·지방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부패고리를 확인하고 관련사범을 엄단함

  ※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 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환수 예정임

Ⅰ 피고인

- A (60세, 수상레저업체 회장, 전 00투자증권 회장, 구속)
- B (40세, 수상레저업체 대표이사, 구속)
- C (63세, 지역언론사 대표, 구속)
- D (63세, 설계사무소 대표, 브로커, 구속)
- E (63세, 전 지방공무원, 브로커, 구속)
- 불구속 11명 (가평군 공무원, 지역 언론인, 수상레저업체 임직원, 법인 등)

Ⅱ 공소사실의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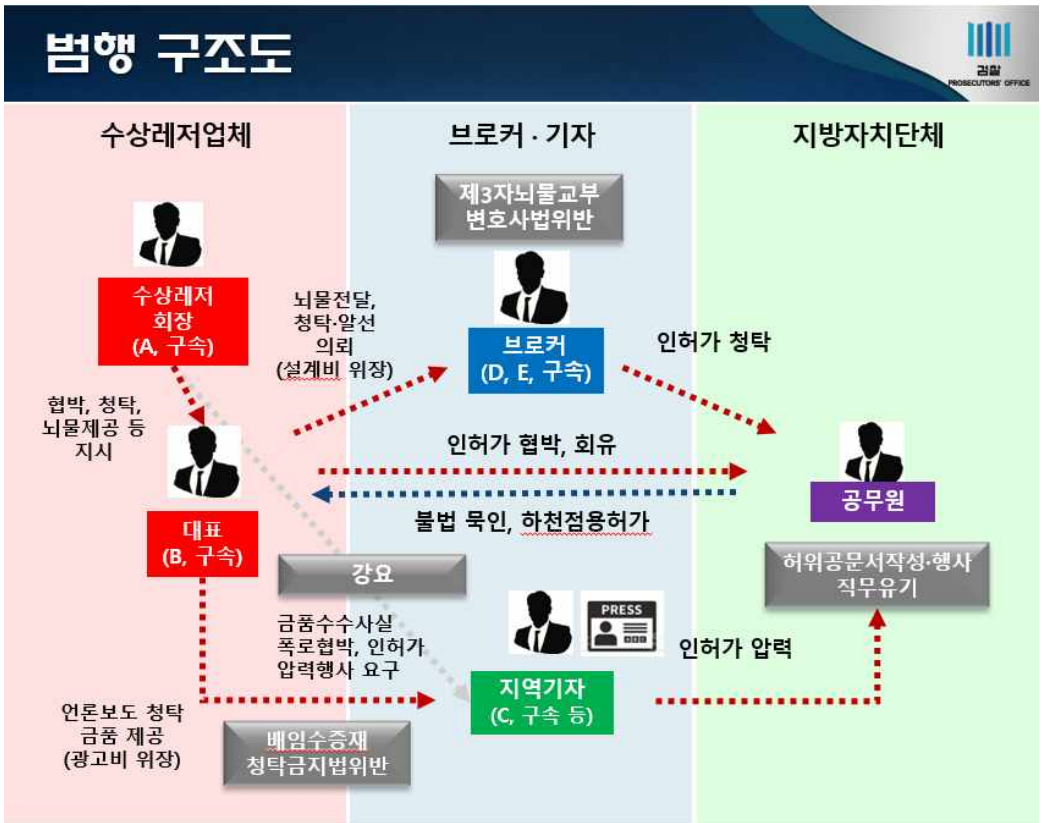

- **수상레저업체 회장·대표이사**
  - (A, B) '19. 5.경 **수상레저시설 허가를 위해 공무원 등을 협박**하고, **브로커·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하고, 금품을 제공**하여 허가를 받아 불법 영업 및 단속무마 [제3자뇌물교부, 강요, 공무집행방해, 배임증재, 청탁금지법위반 등]
  - (A, B 등) 불법 건축, 무허가 영업 등 11건의 행정법규 위반 [하천법위반 등]

- **지역언론인 · 브로커**

  - (지역언론인 C 등) '19. 5. ~ '22. 7.경 공무원 뇌물 전달, 인허가 청탁·알선 및 기사 청탁 명목으로 광고비로 위장한 **약 1억 1,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** [배임수재, 청탁금지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

  - (브로커 D, E) '19. 6. ~ '20. 10.경 공무원 뇌물 전달, 인허가 청탁·알선 및 단속무마 명목으로 설계비로 위장한 금품 **약 4,900만원 수수** [제3자뇌물취득, 변호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]

- **가평군 공무원**

  - '19. 5.경 수상레저업자, 브로커, 언론인 등의 청탁·회유를 받고 **불법 공사, 불법 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 허가** [허위공문서작성·행사, 직무유기]

Ⅲ 수사경과

○ '22. 5. 27. 남양주지청, 사건 접수(이송)

○ '22. 8.~10. 사건 관계자 계좌·통신 추적 수사

○ '22. 10.~12. **가평군청, 수상레저업체, 지역언론, 브로커 사무실 등 압수수색**
수상레저 대표(B), 언론인(C), 브로커(D, E) 구속 기소

○ '23. 1. 9. **수상레저 회장(A) 구속 기소, 나머지 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**

Ⅳ 사건 개요

- **개발업자·토착세력·지역언론·지방공무원이 유착하여 지방자치권력 사유화**

  - 본건은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**개발업자, 지역토착 브로커, 지역언론, 지자체가 유착**하여 **인허가권을 남용**함으로써 **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한 지역 토착비리 사건임**

  - 개발업체는 청정지역 내에서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을 하면서 무단 벌목, 불법 하천 준설,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**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** 결과를 초래함

● **청정지역 사업인허가권을 둘러싼 전방위 로비에 무너진 지방자치행정**

- 투자증권사 회장 출신인 피고인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청평호에 **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짓기 위해, 막강한 재력으로 브로커·기자 등을 동원한 로비를 벌여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(9,026㎡)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냄**

- 지자체는 **불법 공사·영업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불법사실을 은폐하고,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허가에 반대한 다른 지역 출신 상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상식 밖의 행위**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음

V 참고사항 -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들

1 지방자치단체의 제약 없는 인허가 재량권 남용이 비리의 근본적 원인

○ 2,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북한강 청평호 일대는 수산자원보호구역,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됨에도, **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공수역에 축구장보다 넓은 독점적 점유권을 허가해주는 등 무제한적 재량권 행사**가능

○ 심지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, **지자체 스스로 내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도 인허가가 가능**

불법 유선장 구조물(건설중)	수상레저시설(완공)

2 개발업체는 추후 금품로비로 인허가를 받을 생각으로 무허가 공사·영업 강행

○ 수상레저업체 회장은 '18. 12.경 이곳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짓기 위해, 청정지역인 북한강 청평호 일대에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

○ 공사가 끝날 무렵인 '19. 4.경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, **담당 공무원을 협박**하고, **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통해 인허가 금품 로비**

○ 하천점용허가 외에 **수상레저영업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하계 성수기를 맞아 불법영업** 강행

3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좌지우지하며 이권을 챙기는 브로커들

○ 개발업체는 인허가 절차가 지체되자 가평군 전직 공무원 및 군수 비서실장 출신 **브로커들을 포섭, 가평군 고위 간부 및 실무자들에게 인허가 로비**전개

○ 가평군 전직 공무원 출신 브로커는 재직중 뇌물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도, 출소 후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로비 명목 금품수수

○ 군수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는 **군청 앞에 설계사무소를 운영**하며 각종 인허가 로비대가를 **허위 설계용역비 형식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**

4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지역 언론인들

○ **지역 언론인은 불법공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개발업체에 금품을 요구**해 이를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냄

○ 지방선거과정에서 단체장 및 공무원들과 인맥을 쌓아온 **지역 언론인은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는 가평군에 압력**을 가해 인허가 처분이 나도록 영향력 행사

5 지방자치단체는 전방위 로비에 기존입장을 180도 뒤집고 인허가 처분

○ 초기에 가평군은 '불법 구조물 설치'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불법공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,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한 불허 입장이었음

○ 그러나, **개발업체의 전방위 로비**에 넘어간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, 기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**기존의 불허 입장을 뒤집고, 대규모의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**를 내주었음

○ 내부 논의 과정에서 타지역 출신의 부군수가 불허입장을 고수하자,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**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내면서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를 강행**함

Ⅵ 향후 계획

○ 남양주지청은 **'22. 3. 개청 후 집중적인 검찰 직접수사로 지역 토착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**하였는바, 향후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

※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**약 100억 원의 수익 및 수수금품 등 범죄수익환수** 예정 ▨

[별지]

주요 범죄사실 요지

구 분		범죄사실 요지	비고
수상레저업체	A (회장)	• '19. 5.경 수상레저시설 허가 공무원 등을 협박 [강요, 공무집행방해] • '19. 4.~'21. 7.경 브로커, 지역 언론인에게 공무원 회유·청탁을 의뢰하고, 언론보도 청탁과 함께 금품제공 [제3자뇌물교부, 배임증재, 청탁금지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 • '19.경 불법 유선장 증축, 무허가 영업 등 11건의 행정법규 위반 [하천법위반, 수상레저안전법위반,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, 산지관리법위반, 건축법위반,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	구속
	B (대표이사)	• '19. 5.경 수상레저시설 허가 공무원 등을 협박 [강요, 공무집행방해] • '19. 6.~'20. 5.경 브로커, 지역 언론인에게 공무원 회유·청탁을 의뢰하고, 언론보도 청탁과 함께 금품제공 [제3자뇌물교부, 배임증재, 청탁금지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 • '19. 6.경 무허가 상태에서 티켓판매를 위해 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셜커머스업체에 제공 [업무방해] • '19. 6.경 유선장 면적 무단 변경 [하천법위반]	구속
	1 (임원)	• '19. 4.경 무허가 증축 등 5건 행정법규 위반 [하천법위반, 건축법위반,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	
	2 (임원)	• '19. 수변구역 무허가 식당 및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 [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, 수상레저안전법위반]	
	3 (직원)	• '19. 6.경 무허가 상태에서 티켓판매를 위해 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셜커머스업체에 제공 [업무방해]	
지역언론인	C	• '19. 4.~'22. 7.경 언론보도 청탁을 받고 광고비로 위장한 금품 약 1억 1,000만원 수수 [배임수재, 청탁금지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	구속
	5	• '19. 5.경 300만원 수수 [청탁금지법위반]	
	6	• '19. 5.경 언론보도 청탁을 받고 500만원 수수 [배임수재, 청탁금지법위반]	
브로커	D (설계사무소)	• '19. 6.~'19. 10.경 공무원 뇌물 전달 및 인허가 청탁을 의뢰받고 설계비로 위장한 뇌물 2,200만원, 청탁경비 2,200만원 합계 4,400만원을 수수 [제3자뇌물취득, 변호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	구속
	E (전 공무원)	• '19. 6.~'19. 10.경 공무원 뇌물 전달 및 인허가 청탁을 의뢰받고 설계비로 위장한 뇌물 2,200만원, 청탁경비 2,200만원 합계 4,400만원을 수수 [제3자뇌물취득, 변호사법위반,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] • '20. 10.경 공무원 청탁을 위한 경비 500만원 수수 [변호사법위반] • '19. 5.경 C가 수수한 언론보도 청탁 금품에 관련, 금원 차용 후 변제한 것처럼 조작할 목적으로 영수증 위조 [증거위조]	구속
공무원	(4명)	• '19. 5.경 수상레저업자, 브로커, 언론인 등의 청탁·회유를 받고 불법공사, 불법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 허가 [허위공문서작성·행사, 직무유기]	
법인	(2개)	• (수상레저업체 2개) 각 행정법규 위반 (양벌규정) [하천법위반 등]	